

[Algorithm] 동아리 회칙

제정 2023. 03. 24

제1장 총칙

제1조 (회칙)

1. **Algorithm**은 국제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학술 동아리다.
2. **Algorithm**은 **Algorithm**의 주체로서 소속된 사람 모두의 코딩에 대한 학술적 역량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Algorithm**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은 **Algorithm**이 제2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동아리 와 그 회원 전체를 말한다.
2. "회원"은 본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동아리방"은 본회가 학교로부터 제공받는 자치공간을 말한다.
4. "부서"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회원으로 조직된 내부 단체를 말한다.
5. "회장단"은 회칙에 의해 조직된 본회의 주요직위자들의 단체를 말한다.
6. "회장단 회의"는 회장단으로 구성된 상시 의결기구를 말한다.
7.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의결기구를 말한다.
8. "회장단령"은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말한다.
9. "스터디"는 동아리 내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학문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스터디장"은 스터디를 개설한 회원을 말한다.
11. "학술활동"은 스터디 와 대외활동을 통틀어 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가입)

1. 회원의 모집은 매 학기 초에 하며, 회장단령에 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정한다.
2. 회원가입 신청 방법은 회장단령에 의해 모집할 때 공고한다.
3. 제7조에서 명시하는 재가입 불가한 탈퇴를 한 사람의 가입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 되거나 해당 탈퇴가 무효하지 않은 한 승인되지 않는다.
4. 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가입신청에 대해 회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4조 (권리)

1. 회원은 동아리방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이 아닌 사람은 동아리 관련 프로젝트 진행 목적으로만 협업 회원의 동반 하에 출입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은 회원의 행동에 대해 회장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6. 회원은 본회의 재정내역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7. 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회원은 총회의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회칙, 총회의 의결사항, 회장단령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가 또는 불참함으로써 인한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징계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제6조에서 명시하는 최소활동기준을 완수할 의무를 가진다.
5. 회원은 성별, 성적체성, 성적 지향, 종교, 신념, 인종, 국적,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개강총회 및 종강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최소활동기준)

회원은 매 학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완수해야 한다.

1. 스터디를 주 4시간 이상 참여한다.
2. 프로그래밍 활동이 포함되는 개발 관련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참여한다.
3. 동아리에 기술적으로 기여한다.
4. 무단결석한 회원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되고, 1회의 결석은 해당 회원의 스터디 참여시간에서 1시간 삭감한다.
5. 아래의 각 호중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1항을 만족하지 아니하여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6. 졸업 직전학기를 수강중인 경우.
7. 허가된 기간(군 휴학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일반 휴학의 경우 활동 하지 않은 시점부터 연속 2학기) 내에 휴학중이거나 수료 후 졸업 보류중인 경우.
8. 학기중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9. 학기중 가족의 상을 치른 경우.
10. 기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11. 학술부장은 어떤 회원이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활동을 완수했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12. 회장은 어떤 회원이 제1항의 제5호의 활동을 완수했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13. 회장은 어떤 회원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14. 최소활동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기의 시작은 봄학기, 가을학기에 대해 각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개강일로 정하고, 학기의 끝은 각각 다음 학기 개강 전 날로 한다.
15. 회장은 모든 회원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을 기반으로 학기 말에 학술부장과 협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완수하지 못한 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본회에서 탈퇴시킬 의무가 있다.

제7조 (탈퇴)

1. 회원의 탈퇴는 본인이 원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그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탈퇴한 사람은 탈퇴한 학기의 다음 학기 모집에는 가입이 승인되지 않는다.
3. 징계로 인해 탈퇴한 사람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8조 (회장단)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부서의 장 중 회장이 선택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총회를 통해 투표에 의해 임명된다.
3. 부회장은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4. 총무는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5. 각 부서의 장은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제9조 (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제3조에 따라 회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가입신청을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장은 회장단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4.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다.
5. 회장은 부서를 설립하고 해체할 권리를 가진다.
6. 회장은 특별관리자 직위를 설립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7.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다.
8. 회장은 모든 가입신청을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9. 회장은 제6조에 따라 모든 회원의 회원유지자격을 검토하여 회원자격을 유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의무를 가진다.
10. 회장은 모든 징계위원회 소집 요청을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11. 회장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총회나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결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에 준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할 경우 제9조에서 명시하는 회장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여 가질 수 있다. 다만, 부회장을 임명할 수는 없다.

3. 부회장은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회장으로 임명된다.

제11조 (총무)

1.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재정에 지출을 비롯한 모든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에서 보유한 자산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갖는다.
3. 총무는 회장단령이나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지출을 허가할 수 있다.
4. 총무는 본회의 지출과 수입을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다.
5. 총무는 회원의 재정내역 공개요청에 대해 재정내역을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6. 총무는 본회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회장단회의를 통해 회장단령으로 한학기 회비를 정할 수 있으며, 개강총회 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
7. 회비 납부 기한은 개강총회 시 고지한다.
8. 납부 기한을 넘긴 회원은 회장단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회장단이 정한 추가금을 더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9. 유예기간을 넘긴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학술부)

1. 학술부는 본회의 학술적인 발전을 위한 부서이다.
2. 학술부장은 학술부원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술부장은 회칙에 따라서 학술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4. 학술부장은 학술활동에 필요한 강의실 대여, 비용 등에 대한 회원의 요청을 검토하고 총무에게 승인받은후 적절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6. 학술부장은 학술활동에 대한 회원의 모든 보고를 성실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다.
7. 학술부장은 회칙에 어긋난 학술활동을 폐지할 권리가 있다.

제4장 의결기구

제13조 (총회의 목적)

총회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열린다.

1. 본회의 제반 활동 및 동아리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토의 및 결정.
2.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
3. 새 회장 선출.
4. 회칙 개정 협의 및 의결.
5. 회장단령에 대한 문제제기.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로 이루어지며, 각각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회장단령이 정하는 날짜에 열도록 한다.

3. 임시총회는 본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단령을 통해 소집된다.
4.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총회가 열린 시점에서 회원 정원의 1/3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 표결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
6. 총회가 열린 시점에서 회원 정원의 1/3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표결은 회장단
7. 회의에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14조의2 (정기총회 참여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개강총회, 종강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다음의 각 호의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기총회의 의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회장단은 증빙 등을 요구하여 적절히 확인 후 해당 회원에게 총회 참여 의무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3. 휴학중인 경우
4.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공지된 총회 소집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가족의 상을 치룬 경우
6. 공지된 총회 소집시간이 학교의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7. 기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8. 회원이 정기총회 참여의무를 면제받지 않았음에도 불참할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회원의 해당학기 최소활동기준을 가중 적용시켜야 한다.
9. 정기총회의 참여의 기준은 총회의 첫 표결 이전에 총회 장소에 도착함을 의미한다.

제15조 (총회의 투명성)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2. 회의록은 참여한 회원들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구두, 통신에 의한 회의로 할 수 있다.
2. 회장단령은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내릴 수 있다.
3. 회장단령은 모든 회원에게 적절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다만, 회장의 책임하에 중요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의결기구의 서열)

1. 총회의 과반수가 찬성한 의결사항은 어떤 의결사항보다 더 우선된다.
2. 회장단 회의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결심보다는 우선된다.
3. 회장의 결심은 총회나 회장단 회의의 의결사항에 반하지 않을 때에만 존중된다.

제18조 (조건 및 규칙)

1. 학술활동은 회당 2시간 이상의 발표 시간을 가져야 한다.
2. 학술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동아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3. 학술활동에서의 경비는 영수증과 당일 사진을 각각 총무와 학술부장에게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제정 또는 개정 후 7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 개정 내용에 따른 발표 시한에 대한 특별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이 대한민국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후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회칙에 명시되기 이전에 위반되는 사항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